

2026년 울산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수소연합)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울산 예비수소전문기업지원 사업」의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4월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울산광역시장,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사업명) 울산 예비수소전문기업지원 사업
- (지원규모) 총 6억원 / 총 11개社 / 1개社 당 60,000천원 내외
 - * ① 시장진입 패키지 : 30,000천원 내외 * 2개社(전환)
 - * ② 기술지원 패키지 : 60,000천원 내외 * 5개社(확장)
 - * ③ 사업화지원 패키지 : 60,000천원 내외 * 4개社(상용)
- (사업기간) 협약일 ~ 2026. 11. 30. (6개월) * 결과보고서 작성기한 포함
- (접수기간) 2026. 4. 14.(화) 09:00 ~ 2026. 4. 28(화) 18:00까지

2. 지원대상(신청기업)

- (지원자격)
 - ‘수소산업’ 분야 관련 기술력(지식재산권 등) 또는 제품 매출 실적을 보유한 울산 소재지 기업으로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선정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항에 해당되는 기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항

2.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를 활용하는 장비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구분	신청자격 요건	
	시장진입 패키지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패키지
공통	1	• 울산광역시 지역 내 <u>수소산업분야 관련 기술력(지식재산권 등) 또는 제품 매출실적</u> 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2	• <u>사업장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거나</u> 사업 기간 내 이전·신설 예정 기업 - 사업장이란 본사, 공장, 지사, 연구소 등이 소재한 기업(단순 영업소 제외)
	3	• <u>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u>
개별	4	• 기술력 또는 매출실적은 없으나 국가, 민간 등의 R&D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 - 관련 R&D과제 참여 입증 시 신청가능
		• 수소산업 분야 관련 기술력(지식재산권 등) 또는 수소 매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

* 붙임1 수소산업 관련 인증 기준 참고

○ (신청제외 대상)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안))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기업의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지원금 차등 지급

지원사업명	지원기업 수	1개社 당 지원규모	정부 지원 사업비
시장진입 패키지	총 2개社/년	30,000천원 2개社	60,000천원/년
기술지원 패키지	총 5개社/년	50,000천원 1개社	300,000천원/년
		60,000천원 3개社	
		70,000천원 1개社	
사업화 지원 패키지	총 4개社/년	50,000천원 1개社	240,000천원/년
		60,000천원 2개社	
		70,000천원 1개社	

- * 기업별 지원내용 및 예산은 패키지 지원 수요 및 평가위원 의견에 따라 변동가능
- * 시장진입 패키지 지원규모는 고정 (1개社 당 최대 30,000천원)

○ (지원내용)

- 신청기업이 선택한 패키지 내 2개 이상의 분야에 대하여 지원필수
 - * 예, 시제품제작 30,000천원, 홍보 20,000천원, 시장조사 10,000천원
- 참여기업은 총사업비 기준 최소 20% 이상의 기업부담금(현금)을 매칭
 - * 예1, 지원금액 50,000천원(80%) + 기업부담금 12,500천원(20%) = 총사업비 62,500천원(100%)
 - * 예2, 지원금액 60,000천원(80%) + 기업부담금 15,000천원(20%) = 총사업비 75,000천원(100%)
- 사업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기업 별도집행
- 사업 완료 후 3년간 사후관리 및 운영성과 보고의무 있음

○ (분야별 지원규모)

구분	분야	시장진입 패키지	기술지원 패키지	사업화지원 패키지
기술 사업화	시제품 제작	20,000 천원 이내	50,000 천원 이내	50,000 천원 이내
	인증획득	10,000 천원 이내	3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기술도입·보호	20,000 천원 이내	3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지식재산권	10,000 천원 이내	3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연구장비활용	10,000 천원 이내	3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판로개척	전시회	1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30,000 천원 이내
	시장조사	1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30,000 천원 이내
	디자인 개선	1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30,000 천원 이내
	BI·CI 개발	1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30,000 천원 이내
	홍보	1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30,000 천원 이내
컨설팅	컨설팅	1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기타	지역맞춤	2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기술개발	1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20,000 천원 이내

* 기입한 금액은 지원범위의 최대한도금액임

* 시제품제작비용 등 20,000천원 이상 금액은 조달청에 의해 구매 필수

*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비 사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 예정

○ (기업지원 프로그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진입패키지) 울산 지역 내 소재·부품기업이 수소산업으로 재편 및 업종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프로그램 운영 ▪ (기술지원/사업화지원 패키지) 청정수소 생산 등 수소산업과의 유기적인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해 기술 확보 및 사업화하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구분	분야	내용
기술 사업화	시제품 제작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 제작
	인증획득	국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대행비
	기술도입·보호	국내·외 기술도입, 기술 보호(보안, 유출방지 시스템 등)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출원·분석 등
	연구장비활용	국가연구시설 및 지역 연구장비 등 이용료
판로개척	전시회	부스 임차·설치, 비품 임차, 참가비, 장치 설치비 등
	시장조사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디자인 개선	신규·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BI·CI 개발	BI(Brand Identity), CI(Corporate Identity) 개발 지원
	홍보	기업·제품·기술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동영상 등 제작
컨설팅	컨설팅	경영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기타	지역맞춤	지역별 예비수소전문기업 상황에 맞는 자율 지원프로그램 구성 - 예비수소전문기업 대상 한국가스안전공사 교육 지원(50만원/인) 등
	기술개발	기술개발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4.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구분		주요내용				
(1단계) 자격요건 검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격 요건, 세부 내용 등을 사전검토 ○ 본 기관 내 제재기업 대상 여부 및 자가진단 결과 확인 				
	배점	100점	심사장소	신청기업 지정장소		
(2단계)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	위원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산업과 관련된 평가위원 5인에서 7인 내외 평가 ※ 심사의 객관성·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구성에서 제외 				
	방법	발표심사	심사시간	총 20분 내외 (10분 발표 후 10분 질의응답)		
	참석대상	발표기업 사업책임자 외 (제한인원 : 3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평가의 발표는 사업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평가위원의 양해를 구하여 참여연구원이 대신할 수 있음 ○ 평가위원은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 지원기업 선정을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할 경우 평가 대상 기업을 전수 조사함을 원칙으로 함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하되, 가점 및 감점을 포함하여 계산함 ○ 최고 또는 최저점수 중 같은 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제외하고 계산함 				
		구분		세부항목		배점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55점]	기업현황 [20점]	• 지원사업과 지원신청 내용과의 적합성	5	
				• 기업 수소산업 현황의 적합성(수소 매출액, 지식재산권, 연구개발 등)(붙임1)	15	
			추진목표 달성 가능성 [20점]	• 최종목표 설정의 구체성	10	
		사업계획 및 전략의 적정성 [15점]	• 최종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10		
			• 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10		
성과 및 기대효과 [40점]		성장 가능성 및 경제 기여도 [40점]	• 수소전문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붙임 2)	20		
			• 지역사회 기여도(본사 소재지, 사업장 이전 여부 등)	10		
			• 기술적 성과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 기여도	5		
사업비구성 [5점]	사업비의 적정성 [5점]	• 수소 매출, 수출 등 경제적 성과 확대 가능성	5			
		•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5			
		합 계	100			
(3단계) 현장실태 조사	위원구성	○ 현장조사는 사업책임자 혹은 사업담당자가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 내 다른 직원 또는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방법	○ 신청서 기반 질의응답 및 현장 확인 등(기업별 60분 내외)				
기타	이의신청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 결과 통보 5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5. 추진일정

- 신청서접수 : 2026. 4. 14.(화) ~ 4. 28.(화) 18:00 까지
- 선정평가 추진일정(안)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6. 4. 7.(화) ~ 4. 28.(화)
- (접수기간) 2026. 4. 14.(화) 09:00 ~ 4. 28.(화) 18:00 까지
- (접수경로) 유비즈플랫폼(U Biz Platform) 접수 (<https://platform.utp.or.kr/>)
 - 회원가입 사전 진행 필수(시스템 내 기업 승인 필요)
 - 첨부자료를 순서대로 정리 후 압축 접수(파일명 : 000패키지_기업명)
- (서류제출) 유비즈플랫폼 접수 후 우편/방문 제출
 - 신청서류 전체 원본 1부 + 사업계획서(서식3) 7부 제출(4월 28일 도착분까지)
 - PPT발표자료는 발표일 지참(인쇄본 총 7부)

○ (신청경로)

- 울산TP 홈페이지 '지원사업공고' 내 명시된 유비즈플랫폼(U Biz Platform)에서 접수 → 원본서류 출력물 우편접수 또는 오프라인 접수

○ (문의처 및 접수처)

담당자	소속	직급	연락처	이메일
최우진	수소에너지센터	팀장	052-219-0952	wjchoi@utp.or.kr
박미향	수소에너지센터	연구원	052-219-0974	mimi99@utp.or.kr

○ (오프라인 접수처 및 우편주소)

- (44776)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 55번길, 37-19 수소연료전지실증화센터 2층 208호 수소에너지센터

7. 제출서류

- (신청서류) 참여기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첨부된 울산 예비수소 전문기업 지원사업 붙임서류 참조

구분	제출서류	서식 여부	비고
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제1호	필수
2	참여기업 신청서	서식 제2호	필수
3	참여기업 사업계획서	서식 제3호	필수
4	기업 부담금(현금) 출자 협약서	서식 제4호	필수
5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서식 제5호	필수
6	선정평가를 위한 관련 증빙자료(지표 등) * 수소분야 기술력 및 매출실적, 국가 R&D 과제 참여 증빙	기업 제출	필수
7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 제출	필수
8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기업 제출	필수
9	2024년, 2025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국세청 홈텍스 발급)	기업 제출	필수
10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현재 기준)	기업 제출	필수
11	사업장이전 협약서	서식 제6호	해당 시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A4용지 기준, 함초롱바탕/ 13포인트/ 줄간격 160%/ 본문 기준 20쪽 내외로 작성(참고 및 부록 별도)

- 제시된 양식을 참고로 작성하되 필요시 사진과 도면 첨부 가능
- 추진목표, 내용 및 달성 가능성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기업 부담임 (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사업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E-mail을 통해 평가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계획서상 입력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계획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계획서의 붙임으로 제출해야하며, 필요시 온·오프라인을 통해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기업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5월 중, 선정기업 대상 착수보고회 및 협약 예정으로 참석을 요함
- 울산지역 외 소재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이내('26년 9월 말), 울산 내로 본사 이전 완료 및 사업장 유지의무 있음 (2년)
 - * 사업신청 시 '사업장이전 약약서', 결과보고 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공장등록증' 중 해당 서류 제출 의무
- 공고된 기업지원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할 수 있음
- 기업지원비로 사용되는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선금-중도금-잔금으로 지급 예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사업 협약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음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선정기업은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이 이행하여 사업 완수해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3년간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재제부가금

- 허위청구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의 5배
- 과다청구 (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 청구하여 받은 경우) : (원래 받아야하는 지원금)의 3배
- 목적외 사용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9.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지침 및 관련 법령,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10. 이의신청

- 이의신청의 범위
 -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
 -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서류/발표/현장) 등에 이의가 있는 때
- 이의신청 방법
 - (신청기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 5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작성 후 공문과 함께 에너지기술지원단으로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제출
 - (작성방법) 신청기업(기관) 혹은 신청자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 사항, 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적어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유의사항)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

11. 관련법규

- (지원근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관련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지침,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붙임1 수소산업 관련 인정 기준

○ 수소 매출 및 수소 연구개발 투자 인정기준

분 야	대 상	판단방법
제품(부품) 제조, 판매	수소 전용 제품	(기준) 수소차, 충전소, 수전해기, 개질기 등 수소생산, 저장 등 전주기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인정 - 제품: 자동차, 연료전지, 드론 등 - 부품: 고압밸브, 조정기, 피팅 등 - 소재: 촉매, 복합재, 금속 등 - 장비: 제조장비, 시험장비 등
	수소 전용 부품	
	수소 전용 소재	
	수소 전용 장비 등	
	수입판매(국외) (제품, 부품, 소재 등)	(기준) 수입 후 가공이나 공사 등의 추가 작업 없이 재판매하는 경우 수소매출 불인정
수소생산/유통	부생수소	(기준) 수소를 생산, 저장, 유통, 판매 하는 기업
	천연가스 추출 등	
	수전해	
공사 및 시공	수소충전소 구축	(기준) 원 도급 기업의 매출만 인정 ○ 하도급(전기, 건축, 토목, 계장, 감리 등) 일반 공용 공사의 경우 매출 불인정 ○ 하도급 공사중 수소전용 제품, 부품 설치 공사의 경우 인정(예: PSA구축 용역 등)
	수소생산기지 구축	
	출하설비 구축	
	연료전지(발전, 건물용)	
	수전해 설비 구축 등	
기 타	확인불가 매출	(기준) 매출 불인정
	예외 사항	(기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야

붙임2 수소전문기업 정의

○ 수소전문기업이란?

-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수소사업 매출액 또는 연구·인력개발비의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수소전문기업 요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기업 (아래의 2개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①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 비중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구 분	총 매출액 ¹⁾	수소산업 매출액 비중
1	1,000억원 이상	100분의 10 이상
2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00분의 20 이상
3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00분의 30 이상
4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분의 40 이상
5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00분의 50 이상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

②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 비중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구 분	총 매출액 ¹⁾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중 ²⁾
1	1,000억원 이상	100분의 10 이상
2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00분의 20 이상
3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00분의 30 이상
4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분의 40 이상
5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0분의 50 이상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 상세내용은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참고